

의안 번호	제3544호
----------	--------

##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11월 15일 김현주 의원
- 나. 상 정 일 자 : 2024년 12월 13일
- 다. 의 결 일 자 : 2024년 12월 16일

### 2. 제안이유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자금관리 규정을 명시하여 안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2021. 10. 19.) 및 시행(2022. 4. 20.)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지역사랑상품권법 및 행정안전부 종합지침에 따라 강화된 자금 운영 기준 신설(안 제4조의2)
  - 지역화폐 자금관리를 시금고에 설치·운영 관리하여 안정성 규정
  -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공개하여 자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
- 나. 지역화폐 활성화 지원의 할인 판매 비율의 범위를 명시(안 제6조제2항)
- 다. 가맹점 등록규정 정비
- 라. 지역화폐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환전, 운영대행사 등의 정보공개 조항 신설(안 제22조의2)

4. 검토의견 : 생략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부 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주문사항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명칭이 바뀌었지만 이미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지역화폐”의 명칭을 바꿀 필요성과 그에 따른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다음연도에 필요자금으로 활용하는 사항에 대해 세부적 활용 계획 수립이 필요함.

11. 결과보고서 첨부서류 : 없음